

「2025 블록체인 기반 AI 융합 응용서비스(API) 개발 자금 지원사업」 모집 2차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(AI)과 융합을 통해 디지털 신뢰를 확보하고, 국내·외 수요 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「2025 블록체인 기반 AI 융합 응용서비스(API) 개발 자금 지원사업」에 대한 2차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4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블록체인·AI 등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동사업화 및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용서비스(API) 개발자금 등 지원
- (지원대상) 국내 블록체인 기반 AI 융합 서비스 개발 기업(1개社 선발)
 - ※ 창업 9년 미만, 지원하는 과제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 '가상자산' 관련 분야 해당하지 않으며,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
- (참여방법) 단독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
 - ※ 2025년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2025년 블록체인 공공·민간분야 집중·확산사업 선정 기업 중 동일한 과제로 제안한 경우,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2025년 12월 19일
- (지원방식)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(자부담 25% 이상) [붙임]
 - ※ 기술료는 해당사항 없음(단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)
- (사업비 지급방법) 총 지원금액에서 선금 70%, 잔금 30% 분할 지급
 - ※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,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

□ 모집분야

구분	총계	수요기업 및 제안과제(총 1개사)	
공급자 제안형 (자유주제형)	1개 50백만원	KB국민은행	국내·외 금융 분야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·AI 융합 기술 서비스

○ 공급자 제안형(총 1개社)

- (공급자 제안형) 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 자유(API) 제안

○ (선정방식) 신청·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/발표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,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 추진

<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>

-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와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(사업계획서)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/공사는 적용하지 않음) ※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름
 - 기업의 부도, 자기자본잠식 기업인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 -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①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-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
확인근거 (증빙서류)	■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*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근거로 판단 ※ (예시1) 개인: 23년 12월말 재무제표 등 (예시2) 법인: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등
----------------	--

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-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※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 지원항목

○ (지원내용) 개발 자금 지원, 사업화 컨설팅, 투자 검토 등 지원

- (개발 자금 지원) 50백만원 지원
- (사업화 컨설팅) 법제도, 기술, 투자유치, 해외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수요기업 담당자를 통한 사업화 자문 컨설팅 지원
- (투자 검토) 민간 벤처캐피탈(VC) 등 투자 검토 지원

□ 평가절차 ※ 하기 평가 및 협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①서면평가 (7월 30일) '서면평가위원' [정성 100점]	⇒	②자문단 검토 (~7월 30일) '자문단' [참고의견 작성]	⇒	③발표평가 (8월 6일) '발표평가위원' [정성 100점]	⇒	④기술협상 및 협약 (~8월 12일) '전담기관(KISA)'
--	---	--	---	---	---	---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서면평가 (7월 30일)	○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등 ○ 수행기관 역량,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 가능성 등	서면평가 위원회
자문단검토 (~7월 30일)	○ 보유기업 역량 및 사업의 적절성 등 검토	전담기관(KISA), 자문위원단
발표평가 (8월 6일)	○ 자문단 의견서,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반 최종 발표평가 ○ 수행기관 역량,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가능성 등	발표평가 위원회
기술협상/협약 (~8월 12일)	○ 최종 사업금액 확정 ○ 기술협상 및 협약	전담기관(KISA), 사업자

□ 사업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5. 7. 24(목), 14:00까지(14시 이후 접수 불가)
- 접수방법 :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(<https://cont.kisa.or.kr>)
- 제출서류 : 공모안내서 참고
- 문의처
 - 블록체인확산팀 박소연 선임연구원(061-820-3936, soyeon327@kisa.or.kr)

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, 본 유의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업비 지원방식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·현물)을 하여야 함
- ※ "총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"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◆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*(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등)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

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

*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

* '공기업'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
1.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24.4)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총사업비의 75% 이하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50% 이하

2.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

-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,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민간부담금의 13% 이상	민간부담금의 15% 이상

※ 소속 연구원 인건비, 연구시설·장비비, 기술도입비,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